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4-22

## 부산지방법원

### 제7민사부

### 판결

사건번호 2013가합477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4. 3. 14.

판결선고 2014. 4. 1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 B은 아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53호로 기소되어 2013. 2. 19. 징역 2년 6월 및 추징 2억 7,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위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2.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① 원고의 처인 E과 이혼한다. ② 원고는 재산분할로 E에게 부산 기장군 F 담 1,213㎡, G 담 1,051㎡, H 담 2,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절대로 양도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I에게 이에 관하여 말하였다가 I의 소개로 법조계 인사에게 청탁할 능력이 있다는 피고 B을 만나게 되었다.

위 피고는 2007. 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내가 부산지방법원에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있으니, 그 판사를 통해 2심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양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판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하는 등 비용이 소요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에게는 친분이 있는 판사가 전혀 없었고, 위 피고는 판사에게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 결과를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는 이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6. 8. 경 1억 원을, 2007. 6. 25. 경 1억 원을, 2007. 9. 3. 경 5,000만 원을, 2007. 9. 7. 경 2,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판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C와 처인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그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고, 위 편취금 일부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으로 피고 B의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 D, C가 피고 B의 위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한 2억 7,800만 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판단

### 가. 법리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념은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급적 관철되어야 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원고는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자 항소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I와 의논을 하였고, 동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B에게 합계 2억 7,8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판사에게 청탁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불법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특별한 친분이 없는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항소심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라도 판결 결과를 바꾸겠다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이 원고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행위가 기초가 되어 피고 B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④ 비록 알선증재자인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 B에게 자신이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담당 판사에게 전달되거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이 예정된 돈을 피고 B에게 교부한 행위는 피고의 변호사법위반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합계 2억 7,8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또한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이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주장된 피고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4-22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곽태현

판사 민수연